

『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」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, 제16조, 제17조)
 - 당초 : 감량의무이행계획
 - 변경 :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
-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규격 변경 및 사용시기 규정(안 제11조)
 - 전용봉투 규격 : 3리터, 10리터, 20리터(3종류) → 20리터로 통일
 - 전용봉투 사용 시기 : 명절 김장철 등 다량 배출 시 한시적으로 사용

- 개별계량 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를 현재 kg당 40원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52원, 2018년 1월 1일부터 60원으로 인상(안 별표 1)
-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을 2017년 1월 1일부터 30% 인상 후, 2018년 1월 1일부터 17% 인상하여 총 47% 인상(안 별표 1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
「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과학경제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2016. 9. 20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
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현재 도내 타시 평균의 54.7%에 불과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,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